

2026학년도 다문화가족, 탈북민 학생 대학생 활동 지원 내용 안내

2026.1. 인재개발처 학생팀

1. 소수집단 학생 지원부서(학생팀) 소개

- 위치: 청강홀 4층
-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- 연락처: 031-639-4479

2. 운영 목적

-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, 탈북민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 활동의 참여를 보장
- 타 부서들과 협력하여 소수집단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학습 및 생활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

3.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설립: 2025.03.01.
- 목적
 -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장애 학생,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학생 편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

4. 소수집단 학생 지원 절차

단계	세부 내용
1. 소수집단 학생 현황 파악 및 요구 조사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신입생 등록 및 재학 소수집단 학생 학적 변동 확인- 신규 등록하는 소수 학생은 온라인 등록신청서 통해 등록 서류 제출- 등록 시기: 상시-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요구 조사도 함께 시행하여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- 해당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소속 스쿨과 공유
2. 지원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초 자료 및 학생의 요구를 기반으로 개개인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- 결정된 지원 내용 및 지원에 대해 알림※ 지원이 되지 않거나 유보되는 경우 사유를 알리고 대안 모색
3. 지원 프로그램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요청 시 소수집단 학생의 학습권 및 대학생 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
4. 실행 점검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
5. 지원 후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평가 내용을 기초로 다음 학기 지원 계획 시 논의 및 반영

5. 소수집단학생 규정 안내

- 1) 장학규정
- 2)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, 탈북민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
- 3)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, 탈북민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(상담등)
 -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, 탈북민 학생)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지원
 - 근로장학생 우선선발을 통해 근로장학금 지급
 - 대학생활 고충상담(학생상담 부서와 연계)
 - 진로 및 취업상담과 추후지도(취업담당부서와 연계)

6. 소수집단학생 지원사항 안내

가. 교수학습 지원

- 1) 수강신청 지원 :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스쿨의 협조를 통해 수강신청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

나. 진로 및 취업지원

- 1) 상담지원
 - 대학생활 고충 상담 : 학생상담 부서와 연계
- 2) 진로 및 취업 지원
 - 진로 및 취업상담, 추후지도 : 취창업센터와 연계

7. 장학금 지원

대상	장학금명	장학규모	최소자격
다문화가정 학생	다문화가정장학금	수업료 500,000원	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정 재학생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
탈북민학생	디딤돌장학금	수업료 전액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 상 북한이탈주민 재학생